

Safe Korea 실현을 위한

지진방재종합대책

2006년 3월

소방방재청
재해경감대책팀

발표 순서

- I. 추진배경
- II. 추진경위
- III. 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의 기본방향
- IV. 지진방재종합대책
- V. 향후 추진계획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I. 지진배경

- 역사지진 기록에 따르면 수십년에서 수백년을 주기로 지진피해 발생
- 17세기 이후 서해안 1회, 동해안 8회 등 총 9회의 지진해일 피해발생
 - ❖ 남아시아 지진해일 발생 (2004. 12. 26)
 - ❖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해역 지진 (2005. 3. 20)



지진방재대책 업무와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



지진T/F팀 설치, 범 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 마련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II. 지진경위

- 지진방재종합개선 과제 선정
 - ❖ 지진방재종합대책 개선과제 국무회의 보고('05.4.12)
 - ⇒ 6개 분야 20개 개선과제 선정
 - 지진/진진해일관측시스템, 내진설계/보강, 지진해일대책, 신속대응/복구, 교육훈련/홍보, 제도적 장치 등
 - ⇒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 발족
-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 운영 (2005. 5. 30~12.31)
 - ❖ 기획단 구성
 - 소방방재청, 삼성방재연구소,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
 - 상근자 11명, 관계전문가 34명, 자문위원회 3개분과 24명, 10개 관계부처 참여,
 - ❖ 8개 분야 25개 개선과제의 업무와 제도 개선
 - ⇒ 범 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 마련 및 지진재해경감대책법(안)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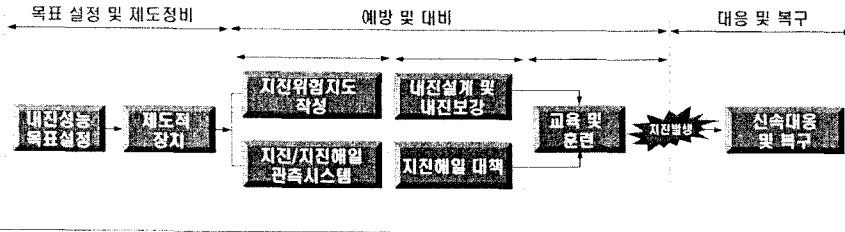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III 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의 기본방향

■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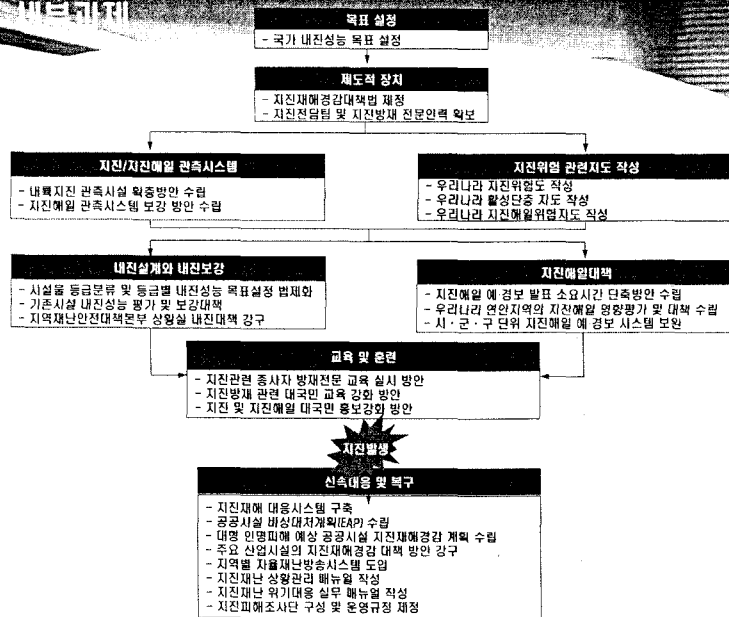
- 국가차원의 내진성능 목표설정 및 법 제정 등 제도 정비
- 지진/지진해일 관측 및 예·경보시스템 개선으로 초기대응대체 완비
- 내진설계기준강화 및 지진위험도 작성 등 지진재해경감기반 구축
-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및 교육, 훈련 강화로 피해경감 및 확산방지

■ 추진체계

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■ 추진체계

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IV. 지진방재종합대책

1. 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
2.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시스템
3. 지진위험관련 지도 제작 및 활용
4. 내진설계와 내진보강
5. 지진해일 대책
6. 신속대응 및 복구
7. 교육 및 훈련
8. 제도적 장치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1. 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

❖ 현실태

- 31개 시설물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중
 - 국가 전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내진안전성 수준이 없음

❖ 개선대책

- 지진재해에 대한 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 (소방방재청)
 -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
 - 마비된 사회기능 조속한 회복
 - ⇒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 확산을 통해 단계적 추진
 - ⇒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"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" 법제화

❖ 중장기대책

- 분야별 중장기 R&D 추진, 다양한 연구 결과 축적 (소방방재청)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2 지진/지진해일 관측 시스템 [1/2]

(1) 내륙지진 관측망 확충

❖ 현 실태

- 최적 내륙 지진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관측망 확충 시급
 - 현재 기상청 지진관측시설 (지진계 36개소, 가속도계 75개)
 - 관측소 중복설치 방지와 자료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

❖ 개선대책

- 지진관측시설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(기상청)
 - ⇒ 2007년까지 지진관측소 9개소, 가속도관측소 30개소 증설
- 기상청 확충계획에 의거 지진관측시설 설치 법제화 (소방방재청)
- 관측 환경개선 및 관측소 위치 재조정 (기상청 등 지진관측기관)
 - ⇒ 2006년까지 지진관측소 6개소, 가속도관측소 27개소 이전
- 관측자료 공유를 위해 지진관측기관협의회 구성 운영 (기상청)
- 초고층 건물 등 주요시설물 지진거동 특성 관측 추진 (소방방재청)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2 지진/지진해일 관측 시스템 [2/2]

(2) 지진해일 관측시설 확충

❖ 현 실태

- 20세기 들어 동해안에 영향을 미친 지진해일 4회 발생
- 일본 서해안에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동해안 지진해일 피해 우려 상존
 - 1시간~1시간 30분후 지진해일 피해 유발 : 지진해일 관측시설 확충 및 특보 발령시간 단축 대책 시급

❖ 개선대책

- 해저지진계 신설 등 지진해일 관측시설 확충 (기상청)
 - ⇒ '06년 동해 해저지진계 설치, 울릉도 해일파고계 신형으로 교체 및 시주공 지진계 설치
- 지진해일관련 자료 DB 구축으로 예경보시간 단축 (기상청)
 - ⇒ 동해안 주요지점의 지진해일 전파, 도달시간, 예상최대 해일고 등을 DB화하고, 국가지진정보시스템과 연계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8. 지진위험지도 작성 (1/3)

[1] 지반진동 지진위험지도 작성

❖ 현 실태

- '97년 지진공학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지진위험지도 발표
 - 이후 많은 지진관측 자료 확보
 - 기존 지진위험지도 보완 필요
- 지반조사자료 통합관리 미흡

❖ 개선대책

- 국가지진위험지도를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증 [소방방재청]
- 자치단체의 지역지진위험도 제작 법제화 [소방방재청]
-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획득한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의 통합관리방안 법제화 [소방방재청]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8. 지진위험지도 작성 (2/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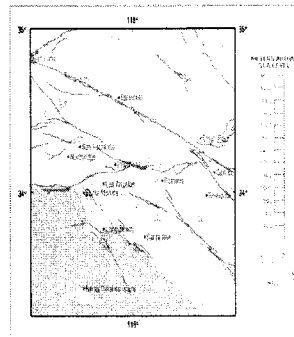
[2] 활성단층 지도 작성

❖ 현 실태

- 우리나라 활성단층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국한
 -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활성단층 존재여부를 알 수 없어 주요 산업시설이나 사회기반 시설 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.

❖ 개선대책

- 활성단층 조사, 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관련 법제화 추진 [소방방재청]
- ↳ 활성단층 조사, 연구와 자료 DB화, 활성단층 지역의 개발 및 시설물 설치제한 법제화 추진



예)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활성단층 지도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3. 지진위험지도 작성 (3/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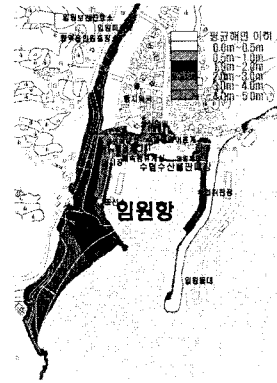
(3) 지진해일위험지도 작성

❖ 현 실태

- 83년과 93년에 동해안 지역에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 발생
 - 침수예상도 등 제작이 미비하여 재해경감과 신속한 주민대피 등 비구조적인 대책 추진 미흡

❖ 개선대책

- 지진해일위험지도 제작, 활용 (소방방재청)
 - ⇒ 해안지역의 지진해일 피해경감을 위한 재해지도 제작 법제화 추진



침수위험도(임원항)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4.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(1/4)

(1) 시설물 등급 분류 및 등급별 내진성능 목표 설정 법제화

❖ 현 실태

- 부처별로 소관시설 내진설계기준 마련 적용, 시설물의 내진등급분류, 내진성능목표, 설계 스펙트럼, 지반 분류체계 등이 통일되지 않아
 - 시설간 내진안전성 수준이 상이하어 국가차원 내진안전성 확보에 불확실성이 높음.

❖ 개선대책

- 범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내진대책 수립을 위한 내진설계기준의 상위개념 통일화 (소방방재청)
 - ⇒ 시설물 등급분류에 따라 등급별 허용피해 목표 설정 법제화 추진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4.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(2/4)

(2) 기존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대책 수립

❖ 현실태

-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 기존시설물 중 일부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, 연구 및 평가 추진
 -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.

❖ 개선대책

-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대책 법제화 추진 (관련부처)
- ⇒ 관계부처별로 소관 내진설계 대상 기존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증강기대책을 수립, 내진 보강토록 법제화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4.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(3/4)

(3)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내진대책 강구

❖ 현실태

-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 확보 중요
 - 251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분석한 결과, 73%인 184개소가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에 설치됨.

❖ 개선대책

-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법제화 추진 (소방방재청, 자치단체)
- ⇒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을 내진보강 또는 내진설계가 된 건물에 설치토록 법제화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4. 내진설계의 내진보강 (4/4)

(4) 저층건물의 내진대책 수립

❖ 현실태

- 학교 등 공공시설은 건물 크기에 따라 내진설계 적용
 - 규모가 작은 학교 등 공공건물 내진설계기준 미 적용
 - 외국의 지진피해 사례를 볼 때 저층건물 붕괴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
- 내진대책 미비
- ※ 고배지진시 붕괴 건물의 94%가 3층이하 건물
 - 3층이하 건물 4만6천여동(4층이상 3천여동)

❖ 개선대책

- 학교 등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에 대한 내진대책 법제화 추진 (관계부처)
 - ⇒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해 별도 내진대책 강구 법제화
 - ⇒ 정부보조나 지원받는 저층건물에 한하여 내진대책 강구 법제화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5. 지진해일 대책 (1/3)

(1) 지진해일 예경보 발표 소요시간 단축방안 수립

❖ 현실태

-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시 관련기관 등에 신속히 통보되어야 주민대피 등 신속대응 가능
 - 분석·통보 및 통지문을 수작업으로 입력하여 시간지연 및 입력오류 우려

❖ 개선대책

- 지진해일 분석 및 통보시스템 개선 추진 (기상청)
 - ⇒ 소방방재청, 기상청, KBS 등 기관간 비상전용 핫라인 설치(05.4)
 - ⇒ 지진 및 지진해일 전용 통보시스템 구축(05.6)
 - ⇒ 지진해일 특보기준 정량화(05.6)
 - ⇒ SMS 문자서비스/Email/컴퓨터 통신에 의한 신속 통보체계 구축(05.6)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5. 지진해일 대책 (2/3)

[2]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지진해일 대책 수립

❖ 현실태

- 조선시대부터 최근까지 해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대규모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동해안 지역 피해 발생
- 우리나라 연안지역 지진해일 영향평가와 대책 대비

❖ 개선대책 (소방방재청, 기상청)

- ⇒ 동해의 기상지진에 의한 지진해일 침수위험 분석 및 피해경감대책 수립
- ⇒ 남 서해안 지역의 지진해일 위험평가를 통해 잠재위험 확인 및 위험 정도의 정량적 기준 연구 추진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5. 지진해일 대책 (3/3)

[3] 시·군·구 단위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 보완

❖ 현실태

- 지진재난은 지진발생통보 즉시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주민대피 등 신속한 대응 매우 중요
- 후쿠오카 지진발생시 예·경보 전달 및 대응체계에 전반적인 문제 발생

❖ 개선대책 (소방방재청, 지방자치단체)

- ⇒ CBS 휴대폰 문자방송시스템 전국 확대 및 30분 대피계획 수립('05.5)
- ⇒ 민방위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('06~'07)
- ⇒ 재난방송요청 온라인시스템 구축('05.5)
- ⇒ 지진해일 취약지역주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보대상 포함 및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예·경보체계 구축 법제화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6. 신속대응 및 복구 (1/9)

(1)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

❖ 현실태

- 지진 발생시 기상청 통보는 발생시간, 규모, 진앙 등 지진요소 불과,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지진가속도 등을 알 수 없고
- 피해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긴급지원 체계 가동이 필요하나, 피해규모 등의 재해정보 부족으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움

❖ 개선대책

- 지진재해 신속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(소방방재청)
- ⇒ 지진 관측정보로 전국 지역별 진도분포를 중앙 및 지역재난종합상황실에 자동 표출하고, 지역별 건축물 및 인명피해를 예측하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추진('05~'06)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6. 신속대응 및 복구(2/9)

(2) 지진재난 상황관리 매뉴얼 작성

❖ 현실태

- 태풍, 호우 등과 같이 사전예측이 가능한 풍수해와는 달리 지진은 사전예측 불가능, 종합상황실 초기대응 매우 중요
- 현재의 상황관리 매뉴얼은 풍수해 위주로 작성, 갑자기 발생하는 지진재난에는 신속대응이 어려운 실정

❖ 개선대책

- 지진재난 상황관리 매뉴얼 작성 및 지침 시달 (소방방재청, 지방자치단체)
- ⇒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 지진재난 상황관리 매뉴얼 작성 활용 중
- ⇒ 지방자치단체도 작성 활용토록 지침 시달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6. 신속대응 및 복구 (3/9)

(3) 공공시설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

❖ 현실태

- 지진재난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, 긴급 상황 발생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
 - 공항, 고속철 등 다중이용공공시설은 지진발생시 긴급대피, 긴급복구 등을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필요

❖ 개선대책

-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법제화 추진 (소방방재청)
 - ⇒ 지진재해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공공시설 등의 시설물과 지역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토록 법제화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6. 신속대응 및 복구 (4/9)

(4) 대형 인명 피해 예상 공공시설 재해경감계획 수립

❖ 현실태

- 가스, 송유관 등 공공시설은 시설자체 피해뿐만 아니라, 화재, 폭발 등 2차 재해로 주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
 - 자동차단, 화재확산 방지장치 마련 등 피해경감을 위한 재해경감계획 수립 필요

❖ 개선대책

- 대규모 인명피해 예상시설 지진재해경감계획 수립 법제화 추진 (소방방재청)
 - ⇒ 가스, 송유관 등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공공시설에 대해 지진재해경감계획을 수립토록 법제화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6. 시속대응 및 복구 (5/9)

(5) 주요 산업시설의 지진재해 경감대책

❖ 현실태

- 지진으로 주요 산업시설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 국가적인 경제위기 및 사회기반 마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
 - 산업시설 보호 및 사업 계속 경영개념을 적용한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

❖ 개선대책

- 주요 산업시설의 지진재해경감대책 방안 연구 (소방방재청)
- ⇒ 산업체 및 기업에 대해 지진재해경감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유도하고,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BCP개념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추진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6. 시속대응 및 복구 (6/9)

(6) 지역별 자율재난방송시스템 도입

❖ 현실태

- 지진해일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요청부터 실시까지 소요시간 단축이 필요하나
 - '05.5월 방송법 개정으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현재의 통신체계를 활용시 많은 시간 소요예상

❖ 개선대책

- 지역별 자율재난방송시스템 구축 (방송위원회, 방송사)
- ⇒ 방송위원회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, 지역단위 자율재난방송시스템 구축 운영하고, 재난방송 전용 통신 및 전산망 구축
- ⇒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법제화 추진(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)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6. 신속대응 및 복구 (7/9)

(7)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

❖ 현실태

-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범정부적인 역할과 임무가 담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필요하므로
 - 지진 및 지진해일 내습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, 범정부적으로 실행할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필요함.

❖ 개선대책

-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, 배포 (관련부처, 자치단체)
 - ⇒ 주관기관인 소방방재청과 관련부처의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 완료
 - ⇒ 중앙행정기관 산하 실무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진재난 현장조치실무매뉴얼 작성 추진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6. 신속대응 및 복구 (8/9)

(8) 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

❖ 현실태

- 현행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·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
 - 우리나라에 지진피해 사례가 없어 조사단 구성과 세부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.

❖ 개선대책

- 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법제화 추진 (소방방재청, 자치단체)
 - ⇒ 지진재해 원인조사,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중앙 및 지역피해조사단 구성 운영
 - ⇒ 해외에 대규모 지진피해 발생시 해외지진피해조사단을 파견방안 법제화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6. 신속피해 및 복구 (9/9)

(9)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

❖ 현실태

- 최근 지진피해 사례가 없어 지진피해시설물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제도 미비

❖ 개선대책

-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판정을 위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법제화 추진

[소방방재청, 자치단체]

⇒ 지진피해 발생시 건축물과 교량, 라이프라인 등의 안전성 평가 신속 실시

⇒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전문가 D/B 구축, 활용 방안 강구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7. 교육 및 훈련 (1/3)

(1) 지진관련 종사자 방재전문 교육 실시 방안

❖ 현실태

- 지진관련 종사자의 전문지식 부족과 실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훈련 프로그램 부족
- 지진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진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시스템 구축 필요

❖ 개선대책

- 구체적 지진관련 종사자 방재전문 교육 실시방안 추진 [관계부처, 자치단체]

⇒ 재난전문교육기관인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교육과정에 지진재난을 포함

⇒ 방재전문가 연수과정 및 외국단기연수에 지진관련 연수 포함 방안 추진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7. 교육 및 훈련 (2/3)

[2] 지진방재 관련 대국민 교육 강화 방안

❖ 현실태

- 재난시 국민 각자의 대응능력에 따라 피해여부가 결정되므로, 정확한 판단 능력과 적절한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
 - 초·중·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교재가 필요하고,
 - 홍보효과가 큰 군부대, 예비군, 민방위 훈련 등 집체교육 시 지진방재교육 실시 필요

❖ 개선대책

- 실효성 있는 지진방재 관련 대국민 교육 강화 방안 추진 (소방방재청, 교육인적자원부, 국방부, 자치단체 등)
 - ⇒ 초·중·고등학생 지진관련 교재작성 보급
 - ⇒ 군인·예비군·민방위대원 집체교육시 지진방재교육 실시
 - ⇒ 지진행동요령 등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지진체험교육장 설치 추진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7. 교육 및 훈련 (3/3)

[3] 지진 및 지진해일 대국민 홍보강화 방안

❖ 현실태

-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부재와 안전 불감증은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
 - 지진재난에 대해 언론·방송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동영상, 만화, 삽화 등으로 친근감 있는 행동요령 개발보급이 필요함.

❖ 개선대책

- 다양한 지진 및 지진해일 대국민 홍보강화 방안 구축 (관계부처, 자치단체)
 - ⇒ 대국민 행동요령을 건물종류 및 지역특성, 홍보대상 등에 맞게 특성화하여 홍보 추진
 - ⇒ 만화, 삽화, 동영상 등의 홍보물 개발하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 장소에 지진행동요령 게시 의무화 추진
 - ⇒ on-line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및 CD 게임 등 개발 추진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8. 제도적 장치 (1/4)

(1)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

❖ 현실태

- 지진재해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고,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음
 -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관련 사항이 3개조항에 불과
 - 지진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·대비·대응 등의 대책 수립 지난
 - 지진방재 대책관련 업무가 각 부처별 기능에 따라 분산되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움.

❖ 개선대책

-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 추진 (소방방재청)
- ⇒ 지진재해관련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, 지진방재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 추진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8. 제도적 장치 (2/4)

❖ 법(안)의 주요내용 (1/2)

-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
 - 지진관측시설 설치, 주요시설물 지진거동 특성 관측,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의 통지, 지진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등
- 예방 및 대비
 - 지진방재종합대책, 대규모 인명피해 예상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, 지진해일위험지도의 제작 및 활용 등
- 내진대책
 - 국가 내진성능 목표설정, 시설물별 허용피해 목표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, 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활용 등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8. 제도적 장치 (3/4)

❖ 법(안)의 주요내용 (2/2)

- 대응
 - 지진재해대응시스템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, 지진재해 행동요령 작성 및 활용, 지진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, 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, 피해시설물 위험도 판정 등
- 지진해재경감을 위한 기술축적 및 보급
 - 지진해재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, 활성단층 조사 및 연구, 활성단층지도 작성, 내진설비 인증제도 도입 등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8. 제도적 장치 (4/4)

(2) 지진전담팀 및 지진방재 전문인력 확보

❖ 현실태

- 정부조직내 지진업무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등을 총괄할 전담조직이 없어 지진대책의 전문성과 현실성 취약

❖ 개선대책

- 지진전담팀 및 지진방재 전문인력 확보방안 추진 (소방방재청, 기상청)
 - ⇒ 지진방재대책 업무 총괄을 위한 지진방재전담팀 및 전문인력 확보 추진
 - ⇒ 재난전문교육기관인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을 설립, 교육과정에 지진재난을 포함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, 장기과제로 자격인증제도 신설방안 검토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V. 향후 추진계획 (1/3)

1. 지진방재종합대책 지속 추진

- ❖ 지진방재종합대책은 소관 부처청 책임하에 추진하되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소방방재청)에서 총괄

⇒ 8개 분야 25개 종합대책을 18개 단기과제 와 22개 중 장기과제로 구분하고, 40개 세부과제로 세분하여 추진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V. 향후 추진계획 (2/3)

2.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 추진계획

- ❖ 일회성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이 아닌 체계적으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 추진

❖ 추진계획

- 부처협의,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: '05. 12 ~ '06. 4월
- 규제심사 및 법제처 제출 심사 : '06. 5 ~ 9월
- 차관·국무회의 의결, 국회제출 : '06. 10 ~ 12월
- 국회심의 의결 및 공포시행 : '07. 1 ~ 6월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3. 지진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보강

❖ 소방방재청에 지진방재대책팀 신설하고 인력보강

-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을 총괄·조정하고,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진전담팀 신설 및 인력보강

❖ 기상청에 지진전담인력보강

- 지진관측망 구축, 기술개발, 지진감시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지진전담인력 보강

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

